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의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위생용품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본부로 이체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및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대변인을 첨단바이오제품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2호 중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위생용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소통협력과·위해정보과·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및 검사제도과”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소통협력과·위해정보과·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검사제도과 및 위생용품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위생용품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생용품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및 행정제재 총괄
4. 수입위생용품 검사계획의 수립·조정
5. 위생용품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위생용품 관련 단체의 관리 및 위생교육 제도 운영

8.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19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척제 및 그 밖의 위생용품의 위해평가 및”을 “위생용품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생용품(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용품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관한 위해평가, 시험법 개발 및 검증

4의2. 위생용품에 관한 모니터링 및 노출 실태조사

제23조제7항제1호 중 “화장품 및 의약외품”을 “화장품·의약외품 및 위생용품(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장품”을 “화장품 및 위생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화장품 및 의약외품”을 “화장품·의약외품 및 위생용품”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이하 “위생용품수입업”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25조제4항제4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과 위생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식품안전사고”를 “식품 및 위생용품의 안전사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 중 “제외한다)”를 각각 “제외한다)과 위생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제25조제10항제1호 중 “수입 식품등”을 “수입식품등과 수입 위생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 식품등”을 “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식품등”을 각각 “식품등과 위생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및 제3호 중 “수입 식품등”을 각각 “수입식품등과 수입 위생용품”으로 한다.

8. 수입식품등·수출 축산물 및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통계

12.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제31조제1항 중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변인·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임상연구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첨단바이오제품과장·임상연구과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총계 “601”을 “60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99”를 “605”로 하며, 일반직 계 “598”을 “60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0”을 “2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23”을 “22”로 하

고,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02”를 “104”로 하며,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13”을 “115”로 하고,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08”을 “109”로 하며,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88”을 “89”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609”를 “61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07”을 “613”으로 하며, 일반직 계 “606”을 “612”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0”을 “2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23”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02”를 “104”로 하며,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13”을 “115”로 하고,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08”을 “109”로 하며,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88”을 “89”로 한다.

별표 6 총계 “863”을 “90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851”을 각각 “89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7”을 “38”

로 하고,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78”을 “84”로 하며,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수의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 “94”를 “103”으로 하고, 행정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129”를 “138”로 하며, 행정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43”을 “49”로 하고,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85”를 “196”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7조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대 부두
	신전대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전대 부두
	양산수입식품검사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
	신항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신항만, 창원, 김해
	통영수입식품검사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 거제, 사천, 진주, 합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왕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 의왕, 성남, 안산, 시흥, 군포, 과천, 광명
	광주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 여주, 이천, 양평, 하남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일죽면, 죽산면은 제외한다), 용인(남사면으로 한정한다)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인천항, 인천신항)
	용인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용인시	용인(남사면은 제외한다), 수원, 안성(일죽면, 죽산면으로 한정한다)
	김포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 인천광역시 강화군
	광양수입식품검사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순천, 여수, 고흥, 곡성, 구례, 보성, 화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산수입식품검사소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남원읍은 제외한다), 충청남도 서천(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천안수입식품검사소	충청남도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별표 2의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시험분석센터의 명칭·위치(제27조의2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별표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3조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0년 4월 26일까지
2)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	6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2021년 2월 28일까지
3)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0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6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식품(농수산물,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서·해설서 등의 총괄 관리	12. ----- ----- ----- -----의료기기·위생용품-----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생략)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소통협력과·위해정보과·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및 검사제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소통협력과·위해정보과·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검사제도과 및 위생용품정책과-----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식품위해평가부) ① ~ ⑥ (생략)
⑦ 첨가물포장과장은 다음 사항

⑧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위생용품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생용품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및 행정재 총괄
4. 수입위생용품 검사계획의 수립·조정
5. 위생용품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위생용품 관련 단체의 관리 및 위생교육 제도 운영
8.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19조(식품위해평가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을 분장한다.	-----.	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u>화장품 및 의약품의 안전</u>	4. <u>화장품·의약품 및 위생용</u>
<u><신 설></u>	<u>1의2. 위생용품(식품안전과 관</u>	성 심사에 관한 기술 지원	<u>품</u> -----
	<u>련된 위생용품에 한한다. 이하</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u>이조에서 같다)에 관한 위해</u>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u>평가, 시험법 개발 및 검정</u>	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①	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3. <u>세척제 및 그 밖의 위생용품</u>	3. <u>위생용품의</u>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③ -----
<u>의 위해평가 및 기준·규격</u>	-----	분장한다.	-----.
<u>기술 검토</u>	-----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의4. 「위생용품관리법」 제3</u>
<u><신 설></u>	<u>4의2. 위생용품에 관한 모니터</u>		<u>조제2항에 따른 영업(이하</u>
	<u>링 및 노출 실태조사</u>		<u>“위생용품수입업”이라 한다)</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u>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u>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u>및 행정소송</u>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① ~ ⑥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① ~ ⑥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식품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	④ -----
⑦ <u>화장품연구팀장은 다음 사항</u>	⑦ -----	항을 분장한다. 다만, 수입관리	-----.
<u>을 분장한다.</u>	-----.	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식품의	-----
1. <u>화장품 및 의약품의 규격</u>	1. <u>화장품·의약품 및 위생용</u>	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과	-----
<u>기준 및 평가에 관한 조사 및</u>	<u>품(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용</u>	장은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농	-----
<u>연구</u>	<u>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u>	축수산물안전과를 두지 아니하	-----
	<u>같다)---</u>	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품안전관리과장은 제5항 각 호	-----
3. <u>화장품의 위해관리 및 유해</u>	3. <u>화장품 및 위생용품</u> -----	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
<u>물질 기준에 관한 조사 및 연</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등(농축수산물은 <u>제외한다</u>)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4. ----- <u>제외한다</u>)과 위생용품-----
5. <u>식품안전사고</u>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5. <u>식품 및 위생용품의 안전사고</u> -----
6.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u>제외한다</u>)의 조사 및 모니터링	6. ----- <u>제외한다</u>)과 위생용품-----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은 <u>제외한다</u>)의 회수·폐기 관리	11. ----- -- <u>제외한다</u>)과 위생용품--
12. ~ 17의2. (생 략)	12. ~ 1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u>17의3. 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u>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수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u>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u>	1. <u>수입식품등과 수입 위생용품</u> -----
2. <u>수입 식품등의 검사</u> 를 위한 수거	2. <u>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u> -----
3. 수입 부적합 <u>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u>	3. ----- <u>식품등과 위생용품</u> -----
4. <u>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u>	4. <u>식품등과 위생용품</u>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u>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u> 의 검사 통계	8. <u>수입식품등·수출 축산물 및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통계</u>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u>12.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u>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수입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u>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u>	1. <u>수입식품등과 수입 위생용품</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해 <u>수입 식품등</u>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	3. --- <u>수입식품등과 수입 위생용품</u> -----
제3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의약품안전국장 및 <u>바이오생약심사부장</u> 을 말한다.	① ----- ----- ----- ----- ----- <u>독성평가연구부장</u>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u>대변인·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u>	② ----- ----- --- <u>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u>

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임	약효동등성과장·첨단바이오제
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	품과장·임상연구과장-----
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
험분석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	-----
으로 보할 수 있다.	-----.

신·구정원대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01</u>	<u>607</u>	+6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99</u>	<u>605</u>	+6
·	·	·	
·	·	·	
일반직 계	<u>598</u>	<u>604</u>	+6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0</u>	<u>21</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u>23</u>	<u>22</u>	-1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102</u>	<u>104</u>	+2
·	·	·	
·	·	·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 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13</u>	<u>115</u>	+2
·	·	·	
·	·	·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 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08</u>	<u>109</u>	+1
·	·	·	
·	·	·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88</u>	<u>89</u>	+1
·	·	·	
·	·	·	

[별표 3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09</u>	<u>615</u>	+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607</u>	<u>613</u>	+6
·	·	·	
·	·	·	
일반직 계	<u>606</u>	<u>612</u>	+6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0</u>	<u>21</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 관 또는 수의사무관	<u>23</u>	<u>22</u>	-1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102</u>	<u>104</u>	+2
·	·	·	
·	·	·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 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13</u>	<u>115</u>	+2
·	·	·	
·	·	·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 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08</u>	<u>109</u>	+1
·	·	·	
·	·	·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88</u>	<u>89</u>	+1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3</u>	<u>905</u>	+42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851</u>	<u>893</u>	+42
일반직 계	<u>851</u>	<u>893</u>	+42
·	·	·	
·	·	·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약무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37</u>	<u>38</u>	+1
·	·	·	
·	·	·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 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78</u>	<u>84</u>	+6
·	·	·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 수의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	<u>94</u>	<u>103</u>	+9

·	·	·	
행정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u>129</u>	<u>138</u>	+9
·	·	·	
행정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u>43</u>	<u>49</u>	+6
·	·	·	
·	·	·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185</u>	<u>196</u>	+11
·	·	·	
·	·	·	